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관 의 장
 선
 략

제 2022 호 1997. 1. 2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규 칙
 - 제 2798 호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중개정규칙 3
 - 제 2799 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칙규칙 3
 - 제 2800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환규칙중개정규칙 4
 - 제 2801 호 서울특별시경안심사위원회의규칙중개정규칙 6
 - 제 2802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6
- 고 시
 - 제 1997- 7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10
 - 제 1997- 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 11
- 공 고
 - 제 1997- 12호 차량운행제한 12
 - 제 1997- 15호 1997년도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 13
 - 제 1997- 16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 14
- 구 고 시
 - 제 1997- 2호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에따른저적승인(성북) 15
 - 제 1997- 3호 도시계획사업(공경의주차장)실시계획인가(강북) 15

(이연계속)

공									
보									

제 1997 - 2호	도시계획시설(학교)환경결정및지적승인(등본)	16
제 1997 - 2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지적승인(영등포)	17
제 1997 - 4호	하천점용(공작물신축)(관악)	17
제 1997 - 2호	하천점용허가(송파)	17
● 구 공 고		
제 1997 - 10호	도시계획(안)공람(중구)	18
제 1997 - 1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동대문)	18
제 1997 - 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중랑)	19
제 1997 - 8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공람(도봉)	19
제 1997 - 14호	도시계획공람(노원)	23
제 1997 - 4호	도시계획결정(상부계획구역)지적점용허가제관(영등포)	24
제 1997 - 11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24
제 1997 - 6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완료(강동)	24
● 사업소고시		
제 1997 - 4호	하천점용승인(한강관리사업소)	25
제 1997 - 5호	하천점용승인(한강관리사업소)	25
● 사업소공고		
제 1997 - 1호	직업등록(공무원수권원)	26
제 1997 - 1호	차전급제입찰(대공원관리사업소)	27
● 공문시행		
	물동관리전환소요조치(송파구)	29
● 인사발령		
		30
● 기 타		
	정정	31
	출석통지	32

규 칙

서울특별시정경감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
차 공포한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798호

서울특별시정경감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정경감사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감사대상인 경우에는"을
"감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일로부터"로 하고 "단, 부득이한 사정으
로 기한내 감사가 불가능한 때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단,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감사가 불
가능한 때 : 30일 범위내
2. 검찰 및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안 : 수사나 조사가
종결된 후 30일 범위내

제18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㉞특정지역문제나 특수한 사안과 관련된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96. 1. 15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원적 시민단체가 직접 감사를
임구직 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
는바, 그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기
한의 산정시기를 "감사대상으로 결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
일"로 명확히 하고, 검찰 및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나 조사
가 종결된 때까지 감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의2 제4항).

나. 특정지역문제나 특수한 사안과 관
련된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등의 감사조직을 통한 대영
감사 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제18조의2 제8항).

서울특별시공무원수권원직제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799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권원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공무원
수권원(이하"수권원"이라 한다)의 하부조
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수권원에 운영계좌 관리
계좌를 두고, 운영계좌는 지방행정주사로,
관리계좌는 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
주사로 보한다.

제3조(사무분장) 수권원의 제별 분장사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계

가. 수권원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문서·보안·관인관수·복무·인사 및 급역에 관한 사항

다. 직원후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예산·회계·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마. 객실의 운영 및 이용자 관리

바. 식당·휴게실·대청 등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 기타 원내 다른 계의 구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계

가. 건축·토목·조경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기계·전기·통신·방송 등 각종 설비의 운영 및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공무원의 사기양양·삼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 신설됨에 따라 수권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권원에 운영계와 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의 직급을 정함(제2조).

※ 운영계장 : 지방행정주사

관리계장 : 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

나. 개별 분장사무를 정함(제3조).

※ 운영계 : 문서·보안·인사·예산 및 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계 : 건축·토목·기계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80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내지 〈별표 3-24〉의 기능직관정원내용 중 "사무보조원"을 "사무원"으로, "집배"를 "사승"으로 한다.

〈별표 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관정원 "2,411"을 "2,405"으로 하고, "2급관"을 삭제하며, 3급관 정원 "5"를 "8"로, 정원내용 중 부이사관 "2"를 "1"로 한다.

〈별표 2-3〉 보건환경연구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별정직관 정원내용 중 8급상당 공해측정기사 "19"를 "18"로 하고, "환경관리인 1" 다음에 "영양사 1"을 삽입한다.

〈별표 3-3〉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다음에 〈별표 3-3의2〉 공무원수련원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지하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2〉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의 7급관 정원 "12"를 "13"으로 하고, 정원내용 중 "별정직 5" 다음에 "교육행정직 1"을 삽입하며, 9급관 정원 "10"을 "9"로, 교육행정직 "7"을 "6"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감축 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0343

장 (다른 규격의 개정) 직종별 시책제규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기로 중 "보라매교육장·태봉교육장 및 석초교육장"을 "보라매교육장 및 태봉교육장"으로 하고, "보라매교육장장·태봉교육장

장 및 석초교육장장"을 "보라매교육장장 및 태봉교육장장"으로 한다.

(별표) 사무분장표의 민방위체단관리국 민방위과란 중 석초교육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3-3의 2)

공무원수권원지방공무원정원표

급	정원	내 용
계	18	
5급	1	행정직 1
6급	2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7급	3	행정직 1, 투무 또는 화공직 1, 기계·전기 또는 건축직 1
8급	2	행정직 2
행정직	2	7급상당 1: 지도사 1 8급상당 1: 영양사 1
기능직	8	7등급 2: 기계장 1, 전기장 1 9등급 3: 운전원 1, 동립원 1(천역 1), 위생원 1(위생 1) 10등급 3: 운전원 1, 통신원 1, 사무원 1(타자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직명변경, 본청·한시정원 감축 및 공무원수권원 정원조정 등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직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 중 "사무보조원"을 "사무원"으로, "검백"을 "사승"으로 변경함(별표 1-1 내지 별표 3-24).

나. 본청 정원 중 96년말까지 두는 한 시정원 5명을 감축함(별표 1-1).

다. 보건환경연구원의 8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공해측정기사 1명을 영양사 1명으로 상계조정함(별표 2-3).

라. 공무원수권원 신설에 따라 동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함(별표 3-3의 2).
※정원: 18명(일반직 8, 별정직 2, 기능직 8)

마. 새공공화회관의 공연기획 및 홍보업무의 수행 전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 등급을 조정함(별표 3-12).

※전문직 미급 1명 → 다급 1명으로 상계조정

바. 민방위 서울특별시장 보좌관 이하
 서울특별시계획국 및 중 민방위대의
 외부조직인 서울특별시장 보좌관
 (부칙 제 2항).

1997. 1. 25

서울특별시청 조 순 ㉔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월 공포한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청 조 순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2601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각목"을 "각목"으로 한다.
- 제3조제2호 중 "부시장"을 "재무국장"으로 하
 고, "재무국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하
 며, 동조 제3호 중 "재정기획관"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위원
 장을 부시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부
 위원장을 재무국장에서 재정기획관
 으로 변경함(제3조제2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2602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1항 중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2조(공무원 또는 사학인이 아닌 위원
 자격) 조례 제5조3항의 규정의 외한 도
 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4년제 대학의 도시계획관련분야 대학
 교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
 상인 자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책임위원급 이상인 자
5. 관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도
 시계획관련분야 연구소의 부장급(선임
 연구원) 이상인 자
7.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
 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시장은 제2조 규
 정에 의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
 다)을 위촉할 때에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각제 전문가들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

②외부위원 위촉은 도시계획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배수 이상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될 각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인준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안건, 각종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안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을 신청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연구위원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4-1호 및 제4-2호서식의 심의안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보조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참여위원의 선출은 위임된 안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우선으로

하여 선출한다.

제6조(유회선포 등)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부서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조(회의진행 등)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부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되거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안건 양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참석을 신청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참고인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의 관리) ①시장은 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모든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제촉할 수 있으며 제촉된 위원은 재위촉될 수 없다.

시장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비치하고, 이의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의견을 작성하여 심의된 사항을 유관 기관(의회, 감사원, 검찰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안전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속직 3,000분의 1의 도시계획도면에 명확히 이기하여야 하며,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고시일차, 별첨, 고시번호 등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관계서류 및 도면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9조(연구위원) 시장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전임연구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안전담당 수석연구위원과 도시정책담당 수석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자격) ①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단장이 공석 또는 기타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업무 등)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전의 사후 관리
2. 회의록 작성과 공개용 회의록 요지 작성
3. 도시계획관련 각종 고시의 일괄 관리(사본) 및 연도별 도시계획 연혁 편찬
4. 도시계획상황실 자료 구축 및 운영
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또는 배석 및 안전 심사내용 설명
7.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

는 사항

② 단장은 전임연구위원의 역할 제인별 연구 및 실무실적에 관한 별첨 제7호시스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안전담당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안전 사전심사에 따른 현장조사 총괄
3. 하천구결정 학문위원회안전의 운영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및 상임기획단 사무관리
5.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전의 결과분석
6. 시의회 관련사항
7. 도시계획상황실 운영
8. 기타 단장이 지시한 사항

④ 도시정책담당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1. 정책과제 및 현안도시문제 발굴 및 조사연구의 총괄
2. 관련부서에서 위탁한 정책과제연구의 총괄 및 실무협의
3. 국내의 관련자료수집 및 연구동향 파악
4. 도시계획자료(DB) 구축 및 연도별 도시계획연혁 편찬
5. 도시계획관련 각종 고시의 일괄 관리(사본)
6. 도시연구 집필주간
7. 연도별 정책연구보고서 정리 및 발간
8. 기타 단장이 지시한 사항

제12조(업무의 진행 등) ① 도시계획안전에 대한 사전심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단이 도시계획관련 부서로부터 정책과제를 수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수탁 범위부터 7일 이내의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2. 과업기간을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관련부서와의 협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기획단이 자체자체 수행 중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실적 평가 등) 1. 전임연구위원과 지방전문직 평가는 매월 최종보고서 및 업무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도시계획국 지방전문직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거쳐 실적평가결과는 전임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언론사 논설위원급,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변호관련인사 등으로 함(제2조).

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당해분야의 각계 전문가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촉절차·방

법 등을 정함(제3조).

다. 안전의 종류는 심의·작성·보고안 등으로 하고, 안전제출은 위원회의 회의개회 10일 전까지 그 종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안전상징 절차·방법을 정함(제4조).

라. 회의개회는 매월 두번째 수요일로 정해지고, 안전은 회의개회 5일 전까지 사전적외토록 규정함(제5조).

마. 위원장의 승표안도 의견 등의 권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바. 위원장은 심의안전에 국하여 위원본인의 직결적으로 관여되거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사. 조례의 퇴직비공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고, 비밀누설 위원에 대하여는 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시장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임연구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안전담당 수석연구위원과 도시정확담당 수석연구위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의 자격을 명문화함(제10조).

차. 기획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및 전임연구위원과 전임연구원 중에서 지정된 각 수석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함(제11조).

카. 기획단의 과업을 수탁과업과 자체과업으로 구분하고, 각 과업의 수행방법을 정함(제12조).

다.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전임연구위원의 근무실적 평가방법 등을 정함(제13조).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7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동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속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서대문구·영등포구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 관악구 도시관리과 및 지적과, 강동구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행 결정 및 변경결정 소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의 칙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결정	공원	해동근린공원	강동구 천호동 360 일대	-	26,696.8 증)26,696.8	파이롯트공장 이적지 공원 결정
	공원	창천근린공원	서대문구 창천동 4-55 일대	-	6,322 증)6,322	
	공원	북아현어린이공원	서대문구 북아현1동 113-67	-	826 증)826	
	공원	북한산자연공원	서대문·은평·강북·성북·종로구 일대	29,593,484	29,668,548 증)75,064	서대문구 용은동 잔 1-183 일대 공원편입
	공원	신길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일대	19,588	19,764 증)176	
	공원	백현근린공원	서대문구 용은3동 188-57 일대	1,317,272	1,310,572 감)6,700	공원결정전 해저조성지 공원해제
	공원	근린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104 일대	97,377.3	108,682.8 증)11,305.5	서대문독립공 원

구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 전	변 경 후	
변경 결정	우면의 우면동 103-7 일 대	1,890	0	합)1,890 소요면적 변경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봉천동 일대	12,407,958	12,408,613	증)1,555 주거환경개선 지구 진입로 변경용 도로 확장용 도로 확장용 도로 확장용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산 56-1, 봉천 동 산 37 일 대	3,889,967	3,889,912	감)1,555

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비 고
		기 전	변 경		
변경 결정	사당동구 봉은 3 동 188-57 일대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 지역	6,700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다. 관계도면: 비차장소 비차도면과 같음.

계획과와 건설안전관리본부, 광진구 도시
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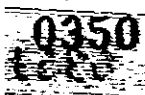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운동장)결정및
변경결정

1997. 1. 25

서울특별시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운동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 공고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구 도			연장 (m)	의정 구분	종점 구분	사용 형태	비 고
	구분	구분	구분					
도로	2	90	30~52	1,620	전호대로 북단	시계 주 간 선 도로	자동차전 용도로	구리시: 2,100m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률	
변경	운동장	광진구 광장동 318 일대	46,510	감 2,780	43,730	

나. 관제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도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
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1997-12호
차량운행제한

도로의 종류	국도·특별시도	시설명	사당고가차도
제한의 대상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구 간	동 고가차도 전구간
기 간	1997. 1. 26 00:00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동 고가차도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 731-6766-8)		

(위치도)

생략(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공고제1997-15호

1997년도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1997년도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간호조무사명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장

1. 응시자격: 응시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이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소정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의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 령 과 목	배 점 비 율
○ 기초간호학개요(차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40%
○ 보건간호학개요	20%
○ 응급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0%
○ 실기	20%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

3. 시험일정

시험명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제1회 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	97. 1. 27(월) ~ 1. 29(수) (근무시간에 한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서초구 서초동 391)	-
	필기 시험	97. 2. 23(일) 10:00	97. 2. 14(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시청 계시공고	97. 3. 21(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 구청에 게시공고
제2회 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	97. 9. 1(월) ~ 9.3(수) (근무시간에 한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서초구 서초동 391)	-



시험명	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 시험		97. 9. 27(토) 15:00	97. 9. 12(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계시공고	97. 10. 22(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 구청에 계시공고

4.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응시원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봉
-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인관 달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제1회: 2,000원(접수장소에서 판매)
제2회: 2,000원(변경시 별도 공고)

○ 인장

5. 기타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료,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고 1회 09:20(2회 14: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최종합격, 교육이수기관을 위임로 기재하거나 시험 도중에 부정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실(582-410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16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작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1997. 1. 25

서울특별시청

1. 청문내용

가. 위반내역

사업자 (사용본거지주소)	사업 면허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	청문	
				일시	장소
유길준(서울 성북구 라힐곡동 33-66)	43280	서울2자 1608	운주 운전 (0.169%)	공고일로부터 12일 이내	서울시 대동교동2 차 사무실

※상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전송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립니다.

구 고 시

●성북구고시제1997-2호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에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7호(96. 10. 17)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 구 길음(미암)지구공공개발사업지구계획(이하 미암지구)의 제13소와 같은 법 시행령 제6

가.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지적승인 조서

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경비과(920-3385~8) 및 시민봉사실(지적과)과 관할동사무소와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1. 25

성북구청장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사유
			당초	변경	증감	
전경결정	미암지구 상계	성북구 길음동 25-2, 486, 524, 하월곡동 98-64 일대	292,000	315,000	(증)23,000	삼강로 동측포함

나. 관전도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경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강북구고시제1997-3호

도시계획사업(공영의주차장)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 강북구공고 제1996-273호(96. 11. 15)로 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공영의 주차장)

가. 사업개요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와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공영의 주차장)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7. 1. 25

강북구청장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도시계획 결정사항
강북구 수유동 49-7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수유1동 49-7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2,341.2㎡	강북구고시 제1996-66호(96. 10. 30)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다. 사업기간: 인가고시일로부터 97. 12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강북구 수유1동 49-7

소재지	지목	지적(㎡)	권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수유1동 49-7	공원	2,341.2	2,341.2	강북구 수유동 49-7	강북구	

라. 위치도 및 지적 평면도: 별첨(생략)
 바.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건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사용할 토지상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901-6640~1)로 문의 바랍니다.

장 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2호,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규칙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금천구 고시제 199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60호(80. 5. 12)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75호(80. 7. 28)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요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정비과(890-23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1. 25

금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학 교	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산 54-1 일대	11,914㎡	용도특저로 인한 면적감소: 62㎡
변 경	·	·	금천구 시흥동 564-5	11,720㎡	토지이동에 의한 면적감소: 132㎡

나. 도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제 1997-2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96. 12. 4)
- 4)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 계획구역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규칙 제3조의 규정의 의지 지적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같은도시는 영등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접속 바랍니다.

1997. 1. 25

영등포구청장

상.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 계획구역 결정 지적승인 결실

구	지	용도지역 변경지역	면적 (㎡)	구분 및 면적 (㎡)	비고
영등포구	대림	일반주거지역	20,800	상세계획구역 (45,000)	대림지구종합
영 994-2	일대	일반주거지역	19,280		

나. 도면: 영등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다. 개요: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도로개설 (도림천 부분복개)

라. 적용기간: 영구

마. 신청인: 관악구청장

●관악구고시제 1997-4호

하천점용(공작물신축)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공작물신축)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7. 1. 25

관악구청장

가. 허가연일일: 1997. 1. 14

나. 위치: 도림천(서울대복개 주차장~동방1교 좌안 머림로 입구)

●송파구고시제 199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1. 25

송파구청장

허가연일	위치	점용현황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1997. 1. 185-5	삼전동	일시점용 1,526㎡	97. 1.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3-9	한국지역난방공사 일원사업처
		영구점용 180㎡	97. 2. 15		
			97. 2. 16~		
			2001. 12. 31		

구 공 고

●중구공고제 1997-10호

도시계획(안)공람

1.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학교) 중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87. 3. 17)로 결정된 덕수중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14조의2, 서울특별시행정장관회의규칙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7. 1. 17 ~ 1997. 1. 31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260-1385~7)

1997. 1. 25
중 구 공 고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기 정	학 교	중구 정동 1-6 일대	10,627.2㎡	감)4,845.8㎡
변 경	* 학 교	중구 정동 1-10 일대	5,781.4㎡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결 정	공용의 청사	중구 정동 1-6	4,845.8㎡	

(3) 관계도면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동대문구고시제 1997-1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행정장관회의입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7. 1. 25

동 대 문 구 청 장

- 1) 양도인가일 : 1997. 1. 16
- 2) 업종 및 권허번호 : 의장중사업 제95 서울-01-20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주)조선건설산업	(주)지편
대표자	김광훈	주현우
영업소재지	동대문구 동두동 206-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5-1
등록확보액	의장(95-300,000,000)	의장(95-300,000,000)

● 중랑구공고제 1997-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거늘 건설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5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3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7. 1. 25

중랑구청장

○ 양도인가 내역

양도인가일	97. 1. 14	인가권자	중랑구청장
업종 및 권허번호	창호 제94-서울-08-12, 철물 제92-서울-11-24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국일기업	(주)국일엔지니어링	
대표자	정광현	정광현	
영업소재지	중랑구 연목동 528-5	중랑구 연목동 528-5	
주민등록번호	560404-1009816	110111-1333113	

● 도봉구공고제 1997-8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공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서류의 공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서류의 공람 등)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사업수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1. 25

도봉구청장

구분	사업시행자의 위 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용 도	시설결정고시	지정고시
1	도봉1동 315-5~287-1간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진입 도로개설공사	B=6~8m L=540m	서고 제103호 (76. 7. 26) 도고 제25호 (96. 5. 7)	서고 제103호 (76. 7. 26) 도고 제25호 (96. 5. 7)
2	상문2동 13-10간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 상문2동 도로개설공사	B=6m L=50m	도고 제96-60호(96. 11. 20)	도고 제96-60호 (96. 11. 20)
3	광문1동 359-1~368-8간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 상문1동 상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B=6m L=56m	서고 제89호 (72. 6. 30)	서고 제89호 (72. 6. 30)
4	상문2동 19-25-67간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 상문2동 도로개설공사	B=6m L=60m	서고 제103호 (74. 7. 26)	서고 제103호 (74. 7. 26)

-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광
- 다. 사업의 기간: 1997. 1~1997. 12. 31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생략)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 법 제4조제3항의 관속인의 주소, 성명: 별첨(생략)
- 바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도봉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1-5405~8)로 문의하십시오.

토 지 조 서

사업명: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진입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 ²)	면적(m ²)	소 유 권	
					주 소	성 명
1	도봉산 325-1	대	76	5		국(재무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격(m)	권입면적 (m)	소유인	상명
2	324-1	대	116	11	도봉동 310	이정화
3	323-4	전	21	2	종로구 화동 70	박인환
4	315-5	대	10	10		
5	322-1	대	31	31	동대문구 승인동 313-11	삼기영
6	320-1	대	72	33		국(적무부)
7	341-29	답	111	111	도봉동 349	김진수
8	341-28	답	110	110	도봉동 383 종로구 옥인동 153-1 옥인연립 7-23	김종기 김종효
9	341-17	답	228	228	서초구 반포동 60-5 반포미도2차츰 502-703	임지현
10	341-16	답	179	179	도봉동 347 도봉동 349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④ 1105-804 종로구 효계동 141-1	김종운 오윤형 김경복 김종섭
11	352-1	전	53	53	도봉동 352	이일행
12	341-26	답	178	34	도봉동 347 도봉동 341-6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④ 1105-804	김종운 이의준 김경복
13	341-8	답	1,012	135	강북구 번동 415-9 (경기도 경기도 양주군 신용보증기금 마포구 공덕동 251-5(의정부))	김학기
14	341-34	답	500	169	우이동 182-3	함열남궁씨 송지공파 도 봉문중회
15	341-36	답	11	11	도봉동 347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④ 1105-804 종로구 효계동 141-1	김종운 김경복 김종섭
16	341-31	답	253	98	도봉동 349	김용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m ²)	소유권	상명
17	341-20	담	26	10	유이동 182-3	관심상하수 상하수관 보관상하수
18	342-5	양	687	267	-	관심상하수 상하수관 보관상하수
19	337-11	도	181	27	-	국(관심부)
20	337-2	도	107	18	-	-
21	353-1	구	4,227	397	-	도봉구
22	353-9	도	491	293	-	국
23	353-11	도	15	15	-	국(건설부)
24	353-5	도	1,035	67	-	국
25	353-7	구	3,966	60	-	도봉구
26	287-1	잡	5,991	397	-	서울시
27	294-2	도	200	29	-	서울시

사업명 : 향문2동 13~26-5간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m ²)	소유권	
					주소	상명
1	향문동 13	전	961	101	동대문구 휘경동 241 경북 포항사 대신동 7-18 향문동 13	안육지 조정자 우복권
2	12-3	담	261	213	동대문구 장안동 453-13	이종태
3	12-2	담	657	38	-	서울시
4	11-7	담	54	3	방학동 696-19	정관래

사업명 : 상문1동 상문초등학교구변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면적 (m ²)	소유권		성명
					주소		
1	상문동 360-35	학	421	225			서용석
2	363-10	대	8	8	상문동 355		김순학
3	360-37	학	12	12			신용식
4	368-8	대	121	121	상문동 355		김순준

사업명 : 상문2동 19~25-67간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면적 (m ²)	소유권		성명
					주소		
1	상문동 산 11	임	1,488	371	강남구 서초동 34 상호(9-1304 은평구 역촌동 77-8 삼우빌라 가-212 강북구 미아동 160-50		정계관 최병승 한기준

●노원구공고제1997-14호

도시계획공람

-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 청사)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 본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7년 1월 17일~1997년 1월 30일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정비과 (950-3365~7)

다.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997. 1. 25

노원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색분	위 치				비 고
			기점	종점	폭(m)	연장(m)	
신설	도로	일반도로	중계동 104-35	중계동 18-10	6	128	등급 : 소로 3 류

2) 도시계획시설(공공의 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공공의 청사	공공동 626-5 주변	2,102	하수장교

●영등포구공고제 1997-4호

도시계획결정(상세계획구역)지내건축 허가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을 다음과 같이 하고합니다.

1997. 1. 25

영등포구청장

1. 제한목적: 상세계획구역내 원활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자 건축허가를 제한.
 2. 제한기간: 건축허가제한 공고일~1998. 12. 31(단, 1998. 12. 3 이전에 상세계획이 확정될 시 상세계획 확정시까지)
 3. 제한대상: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우려

가 되는 경우 보수 허용

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액 관한 사항

4. 제한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94-2 일대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 면적: 약 45,000m²
 - 관련도면: 별첨
5. 기타: 세부사항(상세도면 등)은 우리 구 도시장비과(670-63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공고제 1997-11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7. 1. 25

강남구청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97. 1. 14	설비공사업 95-서울-12-103	우 건 공 영 (주)	강남구 역삼동 836-1	임용환	대원기계제작소	영등포구 대림3동 669-1	최영근

●강동구공고제 1997-6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완료

1.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중 고덕

지구~하일동간 도로개설공사 의 1권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도

크로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동구청장

1997. 1. 25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지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사업기간
고덕지구 ~ 하일동간 도로개설 실공사	강동구고시 제1995-11호(95. 4. 15)	하일동 644-2 ~ 638-2	강동구청장	도로개설 B=10~25m. L=310m	95. 4. 15 ~ 96. 12. 24
	강동구고시 제1995-11호(95. 9. 20)	하일동 618-2 ~ 산 1-2	강동구청장	도로개설 B=10~25m. L=230m	95. 9. 20 ~ 96. 12. 24
문촌동 112-105간 도로개설 실공사	강동구고시 제1994-2호(94. 10. 15) 실시계획변경인가: 강동구고시 제1996-57호(96. 11. 25)	문촌동 112-1 ~ 105-4	강동구청장	도로개설 B=15m. L=230m. 하수도 관경 450mm/m. 연장 419m	94. 10. 15 ~ 96. 12. 20

사업소고시

하천법 제6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7. 1. 25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7-4호
하천점용승인

한강관리사업소장

승인 연월일	위 치	저 목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기간	승인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7. 1. 10	서울시 양천구 아포동 205-5 선	하천	1,200	유선장(보통장) 부대시설	97. 1. 1 ~ 97. 12. 3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28-106	최순탁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7-5호
하천점용승인
하천법 제6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7. 1. 25

한강관리사업소장

승 인 연월일	의 처	지 록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기간	승 인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7. 1.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상	하천	534.4	유 선 장 (보 르 장) 부 대 시 설	97. 1. 1 ~ 97. 12. 31	서울시 영등포구 박종식 박종식 52 손 마 A-711

사업소공고







하여 등록하였기,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1. 25
공무원수련원장

●공무원수련원공고제1997-1호
직인등록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신설에 따른 최 적관직공무원이 사용할 직인을 서울특별시 최 적관직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에 의

1. 등록사항
 - 가. 등록사유 : 관서신설로 인한 최 적관직 지정
 - 나. 사용개시일 : 1997년 1월 15일
 - 다. 직인명 및 인영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정 수관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경 리관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지 출원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총 통관리관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수 립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총 통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일상정보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세입세출외환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본입출출납원인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1997-1호

1차긴급재입찰

경기도 과천시 광적동 159-1 서울대공원 내 그린(광매)시설 관리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96. 12. 24 실시한 결과 미 계약 사실들이 발생하여 국가물당사자로하

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복합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복합항 규정의 의지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 1차 긴급 재입찰 시행을 공고합니다.

1997. 1. 25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 입찰(위탁관리) 대상 및 참가자격

시설명	입찰단위	총시설현황		참가자격	비고
		토지 (m)	건물 (m ²)		

(공 통)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법인(주된 영업장 소재지)
- 국가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식당 (1)	1-1	515	지층 47 1층 395	○ 공고일 현재 식당업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법인 - 개인-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통 - 공동-일반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원본저장)
거북이종합매점 간이격정(13호) 기념품매점(1)	2-1 3-1 4-1	172 21 13	172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법인 - 개인-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통



구분명	구분단위	8. 시설현황		비고	
		면적 (㎡)	건물 (㎡)		
식음료, 휴지 자판기	9-1 식음료 11-39 1호, 6~15호 휴지 14-14 1~8, 14~19호	48	0.19	(동동원 안) ○ 광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법인 · 개인-주민등록증본 1통 · 법인-법인등록증본 및 정관 1통	공도의 확약 없음
	9-2 식음료 1-3(3호) 휴지 2-2(9, 13 호)	4.14	0.38	(동동원 밖)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6의4 항제1(1~6급)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보 대상자	(광고, 사무실 등)
	9-3 식음료 1-3(4호) 휴지 1-1(10호)	3.52	0.19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세대주(1~4급) · 장애인 증명서 1통	
	9-4 식음료 1-5(3호) 휴지 2-2(11, 12 호)	5.16	0.38	· 국가유공자(상이용사) 확인 원 1통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 모자가정 증명서 1통	확인
	9-5 식음료 1-5(2호) 휴지 1-1(20호)	7.76	0.19		

2. 위탁관리기간: 계약일(잔금 납부일)~
1997. 12. 31

· 수탁자의 사용허가는 특별한 사유
(저서 불이행 불량업소 등)가 없는
한 2년 범위 내 1년 단위로 기간연
장 할 수 있음.

- 98년 계약은 97년 위탁료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98년 감정 후 산정
한 위탁료가 98년 위탁료 계약금
액이 되며 증액분은 추가 부담하
여야 한다.

- 위탁료 산정은 도시공원조례 및
당 관리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3. 입찰등록: 공고일로부터 5일간(97. 1. 18
~97. 1. 22)입니다.

4. 현장설명: 입찰유 의사로 갈음(서울대공

원관리사업소 운영과에서 배부)

5. 입찰일시

○ 97. 1. 23(10시~): 식당 1개소, 종합
매점 1개소, 간이매점 1개소, 기념품,
동동원탁 자판기 4개소

6.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 대강당

7.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상
의 최고액 낙찰자)

· 1인 입찰단위별 수량에 제한없이 응찰
할 수 있으며 또한 낙찰유효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시금고 귀속에 관한 사
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3조의 규정(입찰액 대한 5% 이상 금
액)에 의합니다.



- 계약보증금 미납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사의 귀속된다.
- 9. 입찰서류: 국가총당사자모하는 계약의 조건 관련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 10. 계약보증금 납부: 국가총당사자모하는 계약의 조건 관련할 시행규칙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당장가의 10% 이상 금액)에 의합니다.
- 11. 계약의 조건 관련할 납부: 국가총당사자모하는 계약의 조건 관련할 시행규칙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합니다.
 - 수락관리계약 후 기간(10일)내 계약조건을 담부치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동시에 기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되므로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에 부합합니다.
- 12. 입찰요령: 입찰서에 금액 기재 날인(상시입찰 및 우편입찰 가능함) 후 제출
 - 입찰 공고내용 등의 미숙지로 받는 불이익처분은 본인 귀책사유로 당 관리사 입소속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13. 입찰전 유의사항
 - 낙찰자는 수락관리받은 권익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습니다.
- 14. 특기사항
 - 시설물 인수인계: 당사자 원칙
 - 권익시설 중 사적재산의 인수인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합니다.
- 15.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당 사업소 비치) 1부
- 사용인원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참가자격에 기재된 각 서류 1부
- 신분증 인장 지갑
-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운영과 (500-71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시행

송 과 구
(410-3340~4)

문서번호 제우 12311-60
 시행일자 1997. 1. 25
 수 신 서담당관, 과 01-74, 서본부 01-03, 서사 01-36, 시의회사무처, 서구 1-25

제 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동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4조 및 서울특별시 송과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종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하시기 바람.

2. 위 기일까지 신청이 없으시면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송 과 구 정 장
첨부: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요청 내역서 1부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요청 내역서

(단위: 천원)

정부물품 분류번호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설 치 및 취득연도	상 해	비 고
9999-016	계기물압축기	87톤/일 30HP	대	2	19,890	92. 10	요정비	1호기 2호기



장부종종 문류번호	종 명	규 격	단의 수량	단 가	실 처 및 취류관도	상 태	비 고
9999-016	계기물압축기	87톤/일 30HP	대 1	19,890	94. 1	요정비	4호기
9999	전태이너박스	4톤 일반박스	개 5	1,537	92. 8	요정비	92.8 한강 관리사업 소 인수
9999	전태이너박스	8.5톤 압축박 스	개 21	2,149	92. 11 92. 12	요정비	9개 12개
9999	전태이너박스	11톤 압축박 스	개 11	2,450	92. 11	요정비	11개

인 사 발 령

9급 기술직공무원 연직

발령 제30호(1997. 1. 14)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통신서기보시보 검거
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연직

서울특별시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발령 제31호(1997. 1. 14)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통신주사 조덕영 총
무과

서울특별시

6급 공무원 추서

발령 제32호(1997. 1. 5)

건설안전관리본부(강서건설관리(사)) 지
방행정주사보 김종현 지방행정주사에 추사
함

서울특별시

6급 공무원 사망면직

(1997. 1. 7)

건설안전관리본부(강서건설관리(사)) 지
방행정주사보 김종현 사망으로 면직함
서울특별시

지방4급 공무원 파견(연장)

발령 제33호(1997. 1. 15)

내무국 지방서기관 김영호 국무총리실 파
견근무를 면함(97. 1. 15~98. 1. 14)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7급상당) 공무원 연직

발령 제34호(1997. 1. 15)

총무과 지방별정직(비서) 7급상당 홍수
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연직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복직

발령 제35호(1997. 1. 16)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김정) 10등
금 박복복 복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상직 공무원 임명

발령 제37호(1997. 1. 16)

총무과 지방방호원 10등급 김관현 부장
을 명함
지방시설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 용무부 표식장

무용 명단

시 용무부 표식장

기 타

기상직 공무원 임명

발령 제38호(1997. 1. 16)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직정) 10등
급 이영규 강해 의하역 그 직을 명함
시 용무부 표식장

정 질

서울서보 제2020호(97. 1. 15자)에 기재
된 조례 제3361호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
례 및 조례 제3372호 서울특별시주택관리
업조례개정조례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지방발전정책(7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39호(1997. 1. 16)

신원 천희준 지방발전직 7급상당(비서)
역 임함, 7호봉을 임함, 내무국 총무과 근

1997. 1. 25

시 용무부 표식장

오	정	비 고
조례-규칙예	조례-규칙의	161-43쪽 우측 하단에서 11쪽줄 제33조 제1호
오	정	비 고
있는 상호경제조정	있는 경우 상호경제 조정	161-88쪽 좌측 상단에서 셋째줄 제5조 5호 가목
제11조제5항	제11조제5항	161-92쪽 좌측 상단에서 9째줄 제12조 2호 다목
제12조제1화라목	제12조제1호라목	161-94쪽 좌측 상단에서 7째줄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대하여	161-94쪽 좌측 하단에서 17째줄 제18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161-99쪽 우측 하단에서 17째줄 제28조 제2항
법 제29조1항	법 제29조제1항	161-101쪽 좌측 상단에서 첫째줄 제32조 제1항 제6호

